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0

발의연월일: 2024. 7. 3.

발 의 자:진선미·윤종군·임오경

이학영 · 한병도 · 남인순

한정애 · 김성회 · 김준혁

송재봉ㆍ이광희ㆍ김문수

장철민 · 정태호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보고주체로는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을 규정하고 있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관할 혹은 소관 분야 재난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초 보고주체에서 빠져 있음.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당시 경찰이 보고주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됨.

이에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제1항에 포함 되도록 하여 신고에 따른 사건 보고 체계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서장"을 "소방서장, 경찰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시장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①
・군수・구청장, <u>소방서장</u> , 해	<u>소방서장, 경</u>
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나목에	<u> 찰서장</u>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	
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	
체의 장(이하"관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 소	
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행정	
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	
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재난관리주관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확인 ·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 <u>소방서</u>
<u>장</u> , 해양경찰서장,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난
발생을 신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관계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u>소방서</u>
<u>장, 경찰서장</u>
<u>.</u>